

경제 및 고용 동향

◆ 2011년 10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4.8% 증가

○ 2011년 10월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건설업 등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함.

– 광공업 생산은 영상음향통신(-17.7%), 전기장비(-6.6%), 기계장비(-3.5%)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26.3%), 자동차(11.7%), 금속가공(6.8%)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함.

–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임대(-4.3%), 협회·수리·개인(-2.3%)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7.4%), 도매·소매(3.5%), 보건·사회복지(7.6%),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6.5%)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함.

○ 2011년 10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2.2% 증가한 반면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1.9% 감소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1%), 컴퓨터·통신기기 등 내구재(2.9%)의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2.2% 증가함.

– 정밀기기 등에 대한 설비투자는 증가하였으나 일반기계류, 전기 및 전자기기, 자동차 등에 대한 설비투자는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1.9% 감소함.

– 건설기성(경상)은 공중에서 주거 및 비주거용 건축과 플랜트 등 토목공사, 발주자에서는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실적호조로 전년동월대비 9.2% 증가함. 건설수주(경상)는 공공부문에서의 주택, 도로 등 발주 증가와 민간부문에서의 주택, 발전 등의 발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56.3% 증가함.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8로 전월대비 0.3%p 하락하였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대비 0.4%p 하락함.

◆ 2011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3.9% 상승(생활물가지수 3.2% 상승)

○ 2011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2010=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4.2% 각각 상승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통신부문(-3.8)만 하락하고 교통(8.2%), 의류·신발(6.3%), 식료품·비주류음료(6.0%), 주택·수도·전기·연료(6.0%) 등을 중심으로 상승함.
- 2011년 11월 생활물가지수는 105.0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변동이 없고, 전년동월대비 4.5% 상승함. 특히 식품부문은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동월대비 5.1% 상승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09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0월	1/4	2/4	3/4p	10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5.7	-6.1	4.3	16.2	-0.8	25.8	19.5	10.9	11.7	16.2	13.4	10.6	7.2	5.1	6.2(-0.7)
	제조업 생산	-16.5	-6.6	4.4	16.8	-0.9	26.8	20.2	11.2	11.9	16.7	13.7	10.9	7.4	5.1	6.3(-1.8)
	출하	-14.9	-5.8	2.1	12.8	-1.7	21.8	17.2	9.9	11.9	14.4	13.5	11.9	7.2	4.9	4.0(-1.7)
	내수	-15.7	-5.9	3.4	12.3	-1.8	21.2	15.4	6.6	8.3	11.5	11.1	7.2	3.8	2.5	0.2(-1.2)
	수출	-13.8	-5.7	0.4	13.3	-1.7	22.5	19.7	14.5	16.9	18.2	16.8	18.4	11.6	8.0	9.0(-2.3)
	서비스업생산	-0.3	2.4	1.9	3.7	2.0	5.7	4.0	2.3	3.1	3.9	3.3	2.7	3.3	4.2	3.5(0.7)
소비	소비재 판매	-4.7	1.5	2.8	10.8	2.6	9.9	4.9	7.5	5.1	6.6	4.1	5.1	5.7	4.4	2.2(0.6)
투자	설비투자	-17.9	-12.9	-9.9	10.2	-8.2	25.5	24.5	29.3	13.5	25.1	21.6	6.6	4.8	-3.5	-11.9(-12.1)
물가		3.9	2.8	2.0	2.4	2.9	2.7	2.6	2.9	3.6	2.9	3.0	4.8	4.2	4.8	4.2(0.1)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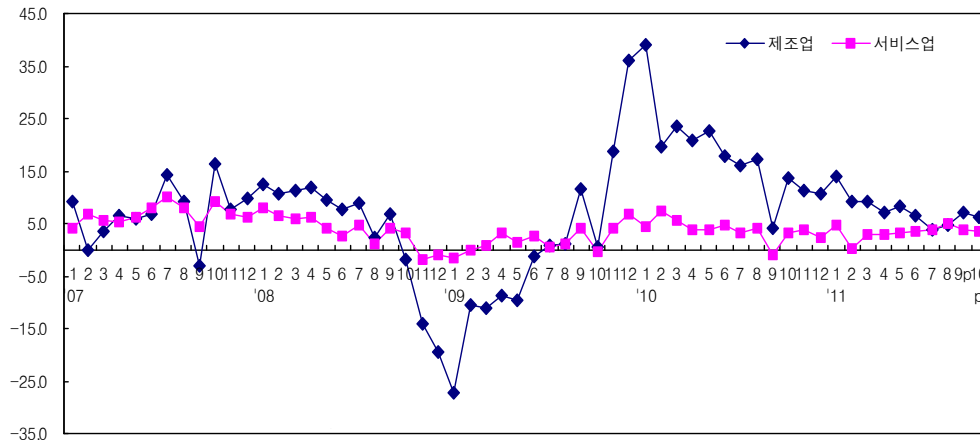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지수는 11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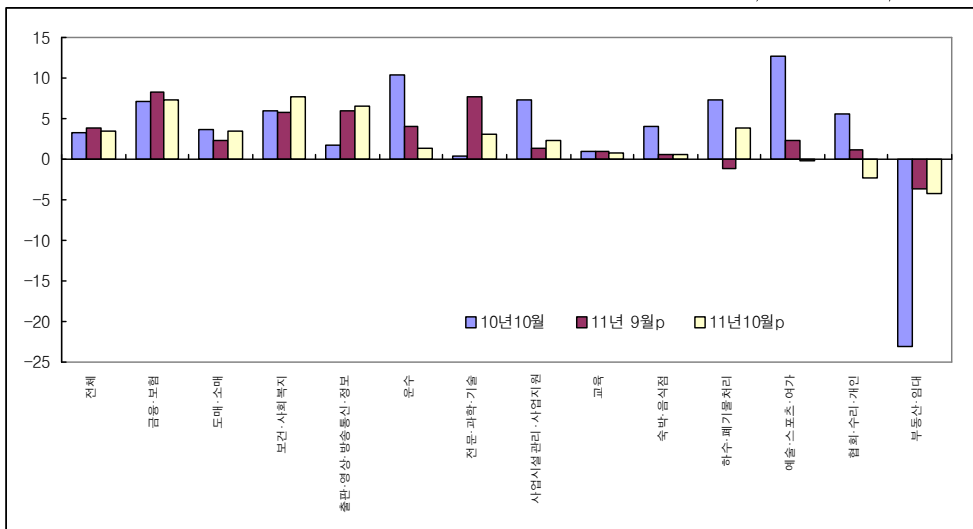
(단위: %, 전년동월대비)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2011. 11), 『2011년 10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김복순,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증가세 지속

- 2011년 11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5,31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2천 명(1.9%)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807천 명으로 251천 명(1.7%) 증가하였고, 여성은 10,511천 명으로 221천 명(2.1%) 증가함.
- 2011년 11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3.5%)이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고, 여성(49.9%)은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함(그림 3 좌측 참조).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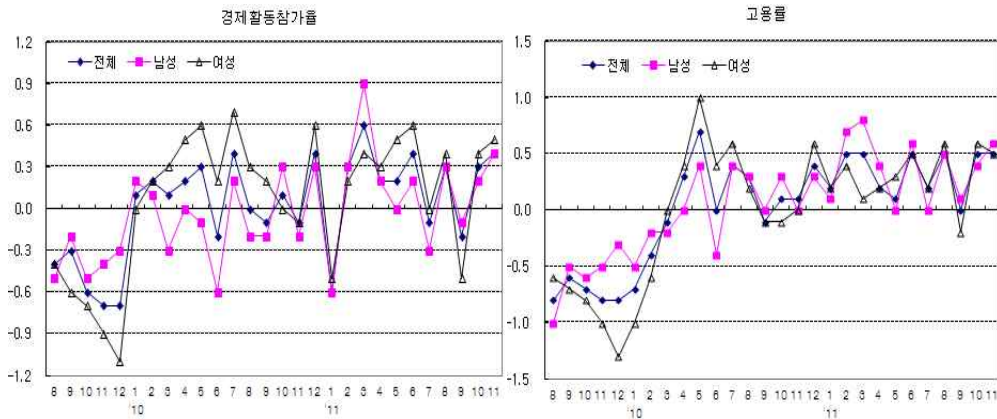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0				2011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1월			
경제활동인구	24,166 (1.5)	25,038 (1.5)	24,993 (1.4)	24,796 (1.4)	24,847 (0.9)	24,488 (1.3)	25,437 (1.6)	25,269 (1.1)	25,409 (1.6)	25,318 (1.9)
참가율	59.8	61.8	61.5	60.8	61.0	59.9	62.0	61.5	61.7	61.4
취업자	23,037 (0.6)	24,170 (1.8)	24,120 (1.6)	23,989 (1.5)	24,109 (1.3)	23,459 (1.8)	24,572 (1.7)	24,483 (1.5)	24,673 (2.1)	24,589 (2.0)
고용률	57.0	59.6	59.3	58.9	59.2	57.4	59.9	59.5	59.9	59.7
실업자	1,130	868	873	808	737	1,028	865	786	736	730
실업률	4.7	3.5	3.5	3.3	3.0	3.9	3.4	3.1	2.9	2.9
비경제활동인구	16,254 (1.0)	15,493 (1.0)	15,656 (0.8)	15,962 (0.3)	15,909 (1.6)	16,392 (0.8)	15,559 (0.4)	15,847 (1.2)	15,760 (0.3)	15,889 (-0.1)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2011. 12), 『2011년 11월 고용동향』.

〈그림 3〉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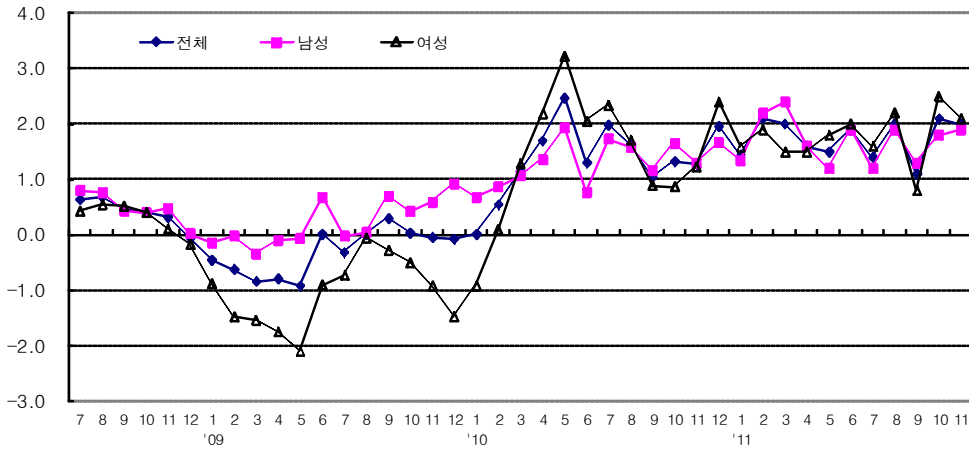
(단위: %p,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2011년 11월 중 고용률은 59.7%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함.
 - 남성의 고용률은 71.2%로 전년동월대비 0.6%p 증가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8.7%로 전년동월대비 0.5%p 증가하였음(그림 3 우측 참조).
- 2011년 11월 중 취업자는 24,58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9천 명(2.0%)이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34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8천 명(1.9%)이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24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1천 명(2.1%)이 증가하였음(그림 4 참조).
- 2011년 11월 중 실업자는 73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 명(-1.0%)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음.
 - 남성 실업자는 46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천 명(-3.7%) 감소한 반면, 여성 실업자는 26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천 명(4.0%)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2%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고, 여성은 2.5%로 전년동월과 동일하였음.
- 2011년 11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88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천 명(-0.1%) 감소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4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천 명(-0.5%) 감소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54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천 명(0.1%)이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17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천 명 감소함.

◆ 제조업 4개월째 감소세 지속

○ 2011년 11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54천 명, 3.1%), 전기·운수·통신·금융업(162천 명, 5.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00천 명, 1.8%), 건설업(66천 명, 3.7%)에서 증가한 반면, 제조업(-85천 명, -2.1%), 농림어업(-12천 명, -0.7%)에서는 감소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0					2011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1월
전 산업	23,037 (0.6)	24,170 (1.8)	24,120 (1.6)	23,989 (1.5)	24,109 (1.3)	23,459 (1.8)	24,572 (1.7)	24,483 (1.5)	24,673 (2.1)	24,589 (2.0)
농림어업	1,235 (-11.7)	1,733 (-4.6)	1,754 (-2.5)	1,544 (-2.2)	1,610 (-3.0)	1,207 (-2.3)	1,736 (0.2)	1,704 (-2.9)	1,757 (-1.8)	1,598 (-0.7)
제조업	3,911 (1.6)	4,015 (4.5)	4,053 (6.9)	4,131 (7.0)	4,139 (7.4)	4,139 (5.8)	4,127 (2.8)	4,041 (-0.3)	4,044 (-1.3)	4,054 (-2.1)
건설업	1,644 (-3.6)	1,816 (2.5)	1,791 (5.4)	1,761 (3.3)	1,776 (2.9)	1,641 (-0.2)	1,774 (-2.3)	1,755 (-2.0)	1,821 (2.3)	1,842 (3.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532 (-1.0)	5,461 (-1.3)	5,443 (-1.2)	5,442 (-1.3)	5,444 (-1.3)	5,471 (-1.1)	5,457 (-0.1)	5,496 (1.0)	5,513 (2.2)	5,544 (1.8)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7,859 (3.2)	8,294 (3.9)	8,244 (0.9)	8,234 (1.0)	8,268 (0.6)	8,097 (3.0)	8,529 (2.8)	8,473 (2.8)	8,521 (3.3)	8,521 (3.1)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834 (4.1)	2,831 (2.4)	2,816 (2.3)	2,855 (1.9)	2,853 (1.6)	2,880 (1.6)	2,933 (3.6)	3,001 (6.6)	3,000 (5.6)	3,014 (5.7)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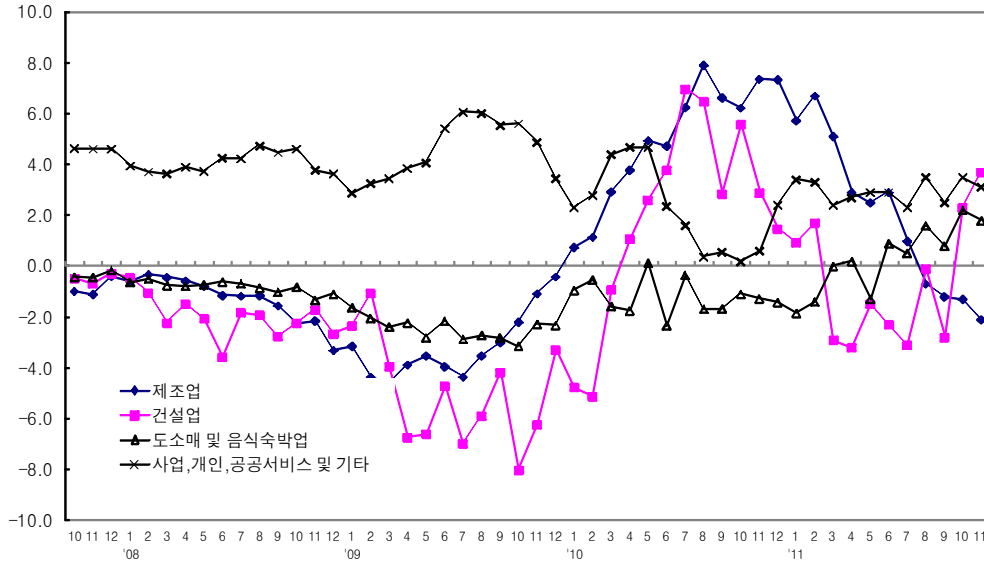
2)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2011. 12), 『2011년 11월 고용동향』.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자영업 4개월째 증가

- 2011년 11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939천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30천 명(1.9%)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7,65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9천 명(2.0%)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0,838천 명으로 505천 명(4.9%)이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5,047천 명으로 22천 명(-0.4%), 일용근로자는 1,765천 명으로 133천 명(-7.0%) 감소함.
 - 상용근로자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영업자도 4개월째 증가하고 있음.
- 2011년 11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28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6천 명(5.3%),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991천 명으로 274천 명(1.3%) 증가함.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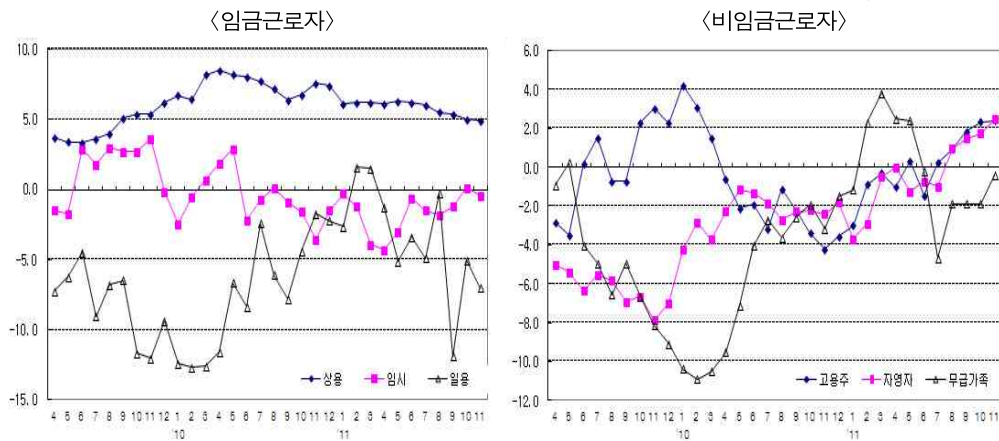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0				2011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1월				
전 체	23,037 (0.6)	24,170 (1.8)	24,120 (1.6)	23,989 (1.5)	24,109 (1.3)	23,459 (1.8)	24,572 (1.7)	24,483 (1.5)	24,673 (2.1)	24,589 (2.0)	
비임금근로자	6,638 (-3.5)	7,023 (-2.6)	6,994 (-2.4)	6,778 (-2.5)	6,809 (-3.0)	6,542 (-1.5)	7,004 (-0.3)	6,965 (-0.4)	7,065 (1.0)	6,939 (1.9)	
자영업주	5,514 (-1.9)	5,696 (-1.6)	5,646 (-2.3)	5,514 (-2.6)	5,531 (-2.9)	5,399 (-2.1)	5,657 (-0.7)	5,680 (0.6)	5,731 (1.9)	5,666 (2.4)	
무급가족종사자	1,124 (-10.6)	1,327 (-6.9)	1,348 (-3.0)	1,264 (-2.2)	1,278 (-3.2)	1,143 (1.7)	1,348 (1.5)	1,285 (-4.7)	1,334 (-2.6)	1,273 (-0.4)	
임금근로자	16,398 (2.3)	17,148 (3.8)	17,126 (3.3)	17,211 (3.2)	17,300 (3.0)	16,917 (3.2)	17,568 (2.5)	17,518 (2.3)	17,608 (2.5)	17,650 (2.0)	
상용근로자	9,808 (7.1)	10,060 (8.2)	10,158 (7.1)	10,320 (7.3)	10,334 (7.6)	10,413 (6.2)	10,681 (6.2)	10,731 (5.6)	10,796 (5.0)	10,838 (4.9)	
임시근로자	4,892 (-0.7)	5,179 (0.8)	5,148 (-0.5)	5,052 (-2.2)	5,069 (-3.6)	4,804 (-1.8)	5,041 (-2.7)	5,072 (-1.5)	5,094 (0.1)	5,047 (-0.4)	
일용근로자	1,699 (-12.5)	1,909 (-8.8)	1,820 (-5.4)	1,838 (-2.8)	1,898 (-1.7)	1,701 (0.1)	1,846 (-3.3)	1,716 (-5.7)	1,718 (-5.0)	1,765 (-7.0)	
36시간 미만	4,851 (56.9)	3,197 (6.7)	3,329 (-1.8)	3,090 (4.4)	3,122 (4.4)	3,246 (-33.1)	3,210 (0.4)	8,464 (154.2)	3,114 (8.5)	3,288 (5.3)	
36시간 이상	17,671 (-8.7)	20,705 (1.1)	20,362 (2.4)	20,620 (1.1)	20,716 (0.9)	19,739 (11.7)	21,067 (1.7)	15,419 (-24.3)	21,251 (1.1)	20,991 (1.3)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1. 12), 『2011년 11월 고용동향』.

〈그림 6〉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 노동시장 주축연령대 실업률 감소

- 2011년 11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25~29세(5.8%, -0.5%p), 30대(2.9%, -0.1%p), 40대(1.9%, -0.2%p), 50대(1.7%, -0.3%p)에서 감소함.
 - 15~19세(7.8%, 1.2%p), 20~24세(8.6%, 1.9%p), 60세 이상(1.8%, 0.1%p)에서는 증가함.
 - 학력별 실업률은 중졸 이하(0.2%p)에서 증가하였고, 고졸(-0.1%p)과 대졸 이상(-0.2%p)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 2011년 11월 중 전체 실업자 730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4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 명 증가하였고,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689천 명으로 16천 명 감소하였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0					2011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1월
전 체	1,130(4.7)	868(3.5)	873(3.5)	808(3.3)	737(3.0)	1,028(4.2)	865(3.4)	786(3.1)	736(2.9)	730(2.9)
15~29세	408(9.5)	332(7.7)	323(7.6)	297(7.1)	266(6.4)	372(8.8)	332(7.9)	284(6.7)	276(6.7)	279(6.8)
30~39세	234(3.9)	217(3.6)	213(3.5)	194(3.2)	182(3.0)	237(4.0)	211(3.5)	189(3.2)	174(2.9)	172(2.9)
40~49세	192(2.9)	154(2.3)	165(2.5)	151(2.2)	140(2.1)	167(2.5)	145(2.1)	138(2.0)	136(2.0)	132(1.9)
50~59세	150(3.2)	105(2.1)	113(2.3)	114(2.3)	102(2.0)	133(2.7)	107(2.0)	108(2.1)	96(1.8)	91(1.7)
60세 이상	146(5.8)	61(2.1)	59(2.0)	53(1.9)	48(1.7)	119(4.5)	70(2.3)	67(2.1)	54(1.7)	56(1.8)
중졸 이하	241(5.1)	131(2.5)	131(2.5)	112(2.2)	96(1.9)	195(4.1)	112(2.1)	119(2.3)	108(2.1)	106(2.1)
고졸	493(5.0)	386(3.8)	408(4.0)	392(3.9)	356(3.5)	465(4.6)	408(4.0)	372(3.7)	331(3.3)	343(3.4)
대졸 이상	396(4.2)	352(3.6)	334(3.5)	304(3.1)	286(2.9)	369(3.8)	345(3.4)	296(2.9)	297(2.9)	280(2.7)
취업무경험 실업자	57	46	35	38	32	52	45	45	37	40
취업유경험 실업자	1,072	822	838	770	705	977	820	741	699	689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1. 12), 『2011년 11월 고용동향』.

(성재민,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1년 9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4.5% 하락

○ 2011년 9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978천 원으로 전년 동월(3,119천 원)대비 4.5% 하락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5.0% 상승해 2,352천 원을 기록함.
- 그러나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6.5% 하락하고, 특별급여 증가율도 32.3% 하락하여 2011년 9월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2010년 9월 대비 6.1% 하락한 3,174천 원을 기록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7.8% 상승한 1,216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표 6〉 임금관련 주요 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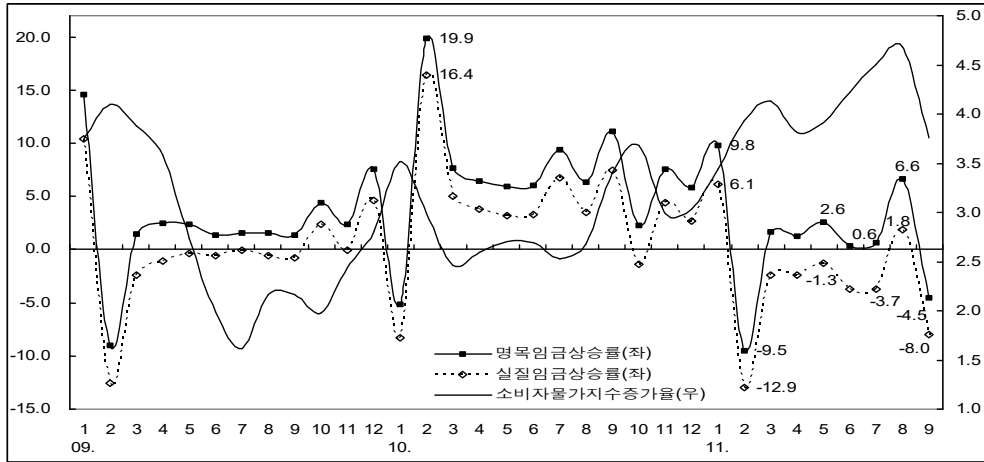
(단위: 천 원, 2010=100.0, %)

		2009	2010	2011							
				상반기	3/4분기	9월	상반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636 (2.6)	2,816 (6.8)	2,744 (6.6)	2,666 (6.2)	3,119 (11.1)	2,766 (0.8)	2,830 (0.2)	2,703 (1.4)	2,923 (0.6)	2,978 (-4.5)
상용 근로자	임금 총액	2,863 (2.2)	3,047 (6.4)	2,966 (6.6)	2,903 (6.3)	3,380 (10.1)	2,930 (-1.2)	2,992 (-1.3)	2,869 (-1.2)	3,109 (-1.1)	3,174 (-6.1)
	정액 급여	2,139 (4.0)	2,234 (4.5)	2,217 (4.5)	2,223 (4.8)	2,240 (4.9)	2,312 (4.3)	2,308 (4.4)	2,316 (4.2)	2,345 (5.0)	2,352 (5.0)
	초과 급여	175 (-2.2)	196 (12.2)	190 (15.3)	198 (13.4)	197 (4.4)	175 (-7.9)	168 (-8.4)	183 (-7.4)	182 (-7.1)	184 (-6.5)
	특별 급여	550 (-2.8)	617 (12.3)	560 (13.1)	483 (10.7)	943 (26.3)	442 (-21.0)	516 (-18.9)	369 (-23.5)	581 (-18.5)	638 (-32.3)
임시·일용근로 자 임금총액	1,073 (1.9)	1,056 (-1.6)	1,057 (-1.0)	1,062 (0.1)	1,033 (-2.7)	1,172 (10.8)	1,149 (9.2)	1,192 (12.3)	1,232 (15.8)	1,216 (17.8)	
소비자물가지수		97.1 (2.8)	100.0 (2.9)	99.3 (2.8)	100.4 (2.9)	101.1 (3.4)	103.2 (3.9)	102.8 (3.8)	103.6 (4.0)	104.7 (4.3)	104.9 (3.8)
실질임금증가율		-0.1	3.8	3.7	6.0	7.4	-3.0	-3.5	-2.5	-3.5	-8.0

주: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7]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0=10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와 초과급여의 하락에 의해 전체 근로자의 명목 임금총액은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함.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실질임금은 8.0% 하락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2010년 기준)을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8.0%를 기록함.
- 물가가 반영된 실질임금 증가율은 2011년 2월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추세를 이어감(그림 7 참조).

◆ 사업서비스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임금상승률이 높게 나타남

○ 광업의 임금 상승이 가장 높은 반면, 사업서비스업은 임금 감소가 가장 높음.

- 2011년 9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광업(20.3%), 숙박 및 음식점업(14.5%), 건설업(7.5%) 순으로 증가함.
- 반면, 2011년 9월 전년동월대비 임금이 감소한 산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0.5%), 제조업(-9.3%), 교육서비스업(-8.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0%)등에서 나타남.
-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이며, 가장 적은 산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나타남.

〈표 7〉 산업별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		2011		
		상반기	9월	상반기	9월
전 산업	2,816 (6.8)	2,744 (6.6)	3,119 (11.1)	2,766 (0.8)	2,978 (-4.5)
광업	3,000 (7.3)	2,933 (6.9)	2,996 (-0.6)	3,324 (13.4)	3,603 (20.3)
제조업	2,985 (9.1)	2,854 (8.9)	3,450 (18.5)	2,898 (1.5)	3,130 (-9.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455 (7.0)	5,281 (8.2)	7,251 (1.3)	5,189 (-1.7)	7,551 (4.1)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441 (5.2)	2,360 (5.3)	2,775 (8.0)	2,391 (1.3)	2,617 (-5.7)
건설업	1,944 (7.9)	1,925 (6.9)	2,165 (10.8)	2,175 (13.0)	2,327 (7.5)
도매 및 소매업	2,769 (7.1)	2,701 (6.8)	3,107 (13.1)	2,817 (4.3)	3,105 (0.0)
운수업	2,381 (5.4)	2,307 (5.7)	2,613 (7.4)	2,316 (0.4)	2,547 (-2.5)
숙박 및 음식점업	1,462 (5.0)	1,434 (3.0)	1,545 (7.0)	1,624 (13.2)	1,769 (14.5)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385 (4.7)	3,320 (4.7)	3,635 (7.1)	3,670 (10.6)	3,829 (5.3)
금융 및 보험업	4,680 (4.7)	4,759 (7.1)	4,985 (4.5)	4,796 (0.8)	5,128 (2.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65 (4.3)	1,983 (6.4)	2,031 (-0.2)	1,990 (0.3)	2,125 (4.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957 (6.9)	3,782 (6.8)	4,064 (-0.5)	3,682 (-2.6)	4,094 (0.7)
사업서비스업	1,848 (8.2)	1,816 (8.3)	1,941 (14.9)	1,654 (-8.9)	1,737 (-10.5)
교육서비스업	3,157 (1.4)	3,154 (0.4)	3,348 (4.6)	2,978 (-5.6)	3,057 (-8.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594 (2.4)	2,553 (2.0)	2,821 (6.8)	2,429 (-4.9)	2,595 (-8.0)
여가관련서비스업	2,107 (0.9)	2,054 (-0.4)	2,159 (2.2)	2,078 (1.2)	2,196 (1.7)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02 (4.0)	2,064 (4.6)	2,374 (9.6)	2,147 (4.0)	2,250 (-5.2)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은 9월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정액급여가 낮은 데에 따른 영향임.

◆ 전 규모에서 명목임금 하락

○ 2011년 9월 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 상승률은 5~299인, 300인 이상 규모에서 모두 하락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2011년 9월 기준 2,811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4%, 300인 이상 사업체는 4,436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4% 하락함.

— 세부 규모로 나누어 보면, 5~9인은 5.4%, 10~29인은 4.8%, 30~99인은 3.6%, 100~299인은 4.7%, 300인 이상은 8.4% 감소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		2011		
			상반기	9월	상반기	9월
전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전체	3,047 (6.4)	2,966 (6.6)	3,380 (10.1)	2,930 (-1.2)	3,174 (-6.1)
	정액급여	2,234 (4.5)	2,217 (4.5)	2,240 (4.9)	2,312 (4.3)	2,352 (5.0)
	초과급여	196 (12.2)	190 (15.3)	197 (4.4)	175 (-7.9)	184 (-6.5)
	특별급여	617 (12.3)	560 (13.1)	943 (26.3)	442 (-21.0)	638 (-32.3)
5~299인	상용임금전체	2,699 (5.5)	2,639 (5.9)	2,972 (8.2)	2,611 (-1.1)	2,811 (-5.4)
	정액급여	2,082 (4.3)	2,065 (4.5)	2,091 (4.6)	2,177 (5.4)	2,216 (6.0)
	초과급여	176 (13.6)	172 (17.6)	175 (6.0)	147 (-14.2)	153 (-12.7)
	특별급여	441 (8.4)	403 (9.1)	706 (21.3)	287 (-28.7)	443 (-37.3)
300인 이상	상용임금전체	4,291 (9.1)	4,129 (8.8)	4,842 (15.0)	4,132 (0.1)	4,436 (-8.4)
	정액급여	2,779 (5.2)	2,756 (4.8)	2,774 (6.0)	2,823 (2.4)	2,826 (1.9)
	초과급여	268 (9.6)	257 (10.7)	277 (1.6)	282 (9.7)	294 (6.1)
	특별급여	1,245 (18.7)	1,115 (19.6)	1,790 (35.6)	1,027 (-7.9)	1,316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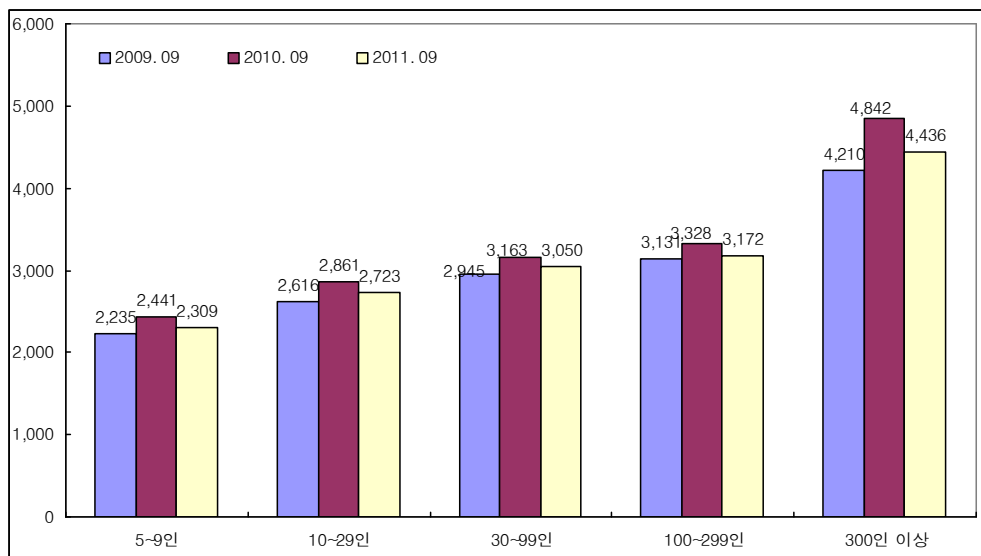
주: 1)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8〉 상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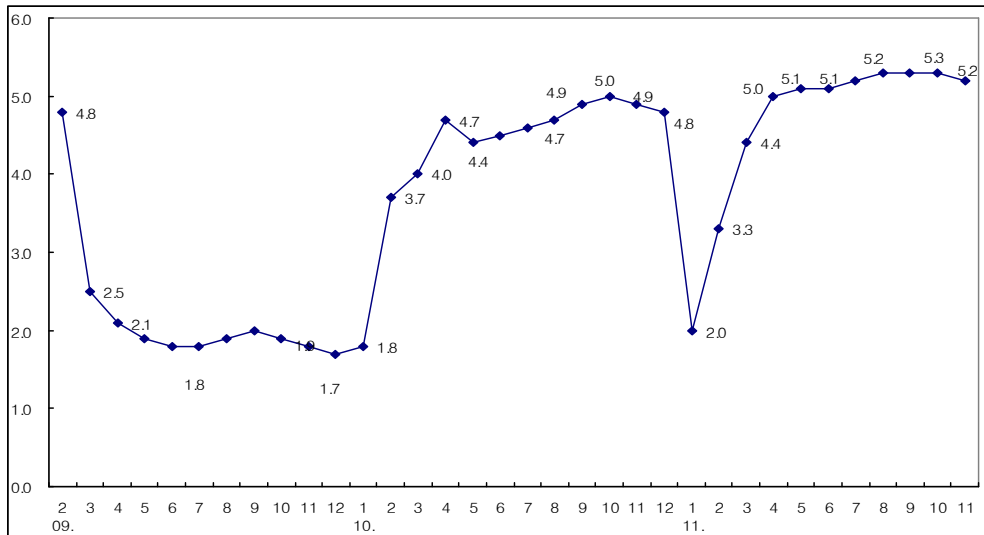
◆ 2011년 11월 협약임금 인상률 5.2%

○ 2011년 11월 협약임금 인상률은 5.2%를 기록함.

- 2011년 11월 말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5.2%로 2010년 같은 기간의 인상률(4.9%)에 비해 0.3%p 상승하였음.

[그림 9]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일반적으로 승진에 따른 인상분,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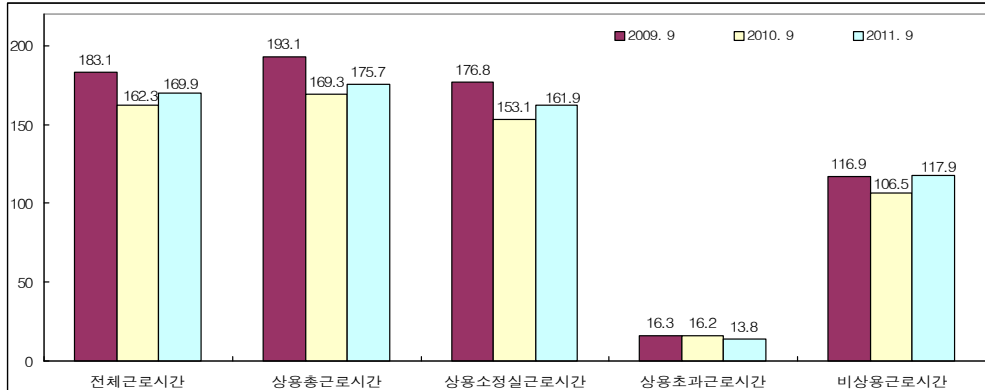
◆ 2011년 9월 근로시간, 전년동월대비 4.7% 증가

○ 2011년 9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4.7% 증가함.

- 2011년 9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69.9시간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162.3시간)에 비해 7.6시간(4.7%) 증가함.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75.7시간으로 전년동월(169.3시간)대비 3.8%, 소정 실근로시간은 161.9시간으로 전년동월(153.1시간)대비 5.7% 증가한 반면, 초과근로시간은 13.8시간으로 전년동월(16.2시간)대비 14.8% 감소함(그림 9 참조).
- 한편, 임시·일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17.9시간으로 전년동월(106.5시간)대비 11.4시간(10.7%) 증가함.

[그림 10]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 증가

○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교육서비스업은 근로시간이 증가한 반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감소함.

<표 9>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09	2010	2011			
			상반기	9월	상반기	9월
전 산업	176.1(-0.3)	176.7(0.3)	175.1(0.6)	162.3(-11.4)	175.1(0.0)	169.9(4.7)
광업	187.6(4.0)	188.1(0.3)	185.2(-0.8)	170.7(-13.4)	185.5(0.2)	180.2(5.6)
제조업	188.5(-0.8)	192.1(1.9)	190.5(3.4)	175.2(-12.7)	189.9(-0.3)	182.6(4.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77.9(2.5)	176.9(-0.6)	174.9(0.2)	169.8(-9.1)	175.2(0.2)	171.9(1.2)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	194.0(0.3)	192.9(-0.6)	191.2(-0.1)	179.4(-11.8)	184.7(-3.4)	178.8(-0.3)
건설업	147.2(-5.5)	146.1(-0.7)	146.9(-2.1)	134.6(-11.0)	154.2(5.0)	148.4(10.3)
도매 및 소매업	179.0(0.2)	177.2(-1.0)	175.8(-0.8)	163.1(-11.7)	173.7(-1.2)	169.0(3.6)
운수업	184.4(8.0)	184.6(0.1)	183.0(0.9)	177.2(-6.4)	178.0(-2.7)	179.8(1.5)
숙박 및 음식점업	164.3(-3.5)	163.7(-0.4)	161.2(-1.8)	154.9(-6.2)	186.3(15.6)	179.7(16.0)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	166.8(0.4)	166.2(-0.4)	164.8(0.6)	148.3(-15.2)	162.9(-1.2)	159.3(7.4)
금융 및 보험업	166.8(0.5)	165.3(-0.9)	163.5(-1.4)	150.1(-12.9)	161.2(-1.4)	159.2(6.1)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2.0(-1.2)	200.4(-0.8)	199.2(-1.0)	191.6(-6.2)	193.2(-3.0)	189.1(-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7.7(0.1)	166.3(-0.8)	164.5(-0.5)	149.0(-15.2)	164.2(-0.2)	160.3(7.6)
사업서비스업	179.0(-1.3)	180.1(0.6)	176.9(-0.6)	167.1(-5.4)	168.7(-4.6)	169.4(1.4)
교육서비스업	153.7(1.9)	149.9(-2.5)	147.7(-3.2)	133.5(-15.8)	150.3(1.8)	146.9(10.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6.4(0.2)	176.5(0.1)	174.4(0.2)	161.8(-11.0)	171.5(-1.7)	166.4(2.8)
여가관련서비스업	161.6(1.6)	158.7(-1.8)	157.6(-2.1)	143.4(-12.7)	155.4(-1.4)	148.7(3.7)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	175.5(-0.2)	173.9(-0.9)	172.7(0.1)	161.6(-11.8)	174.0(0.8)	163.3(1.1)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1년 9월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179.7시간, 16.0%), 건설업(148.4시간, 10.3%), 교육서비스업(146.9시간, 10.0%)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한편, 부동산업 및 임대업(189.1시간, -1.3%),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178.8시간, -0.3%)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2011년 9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89.1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교육서비스업(146.9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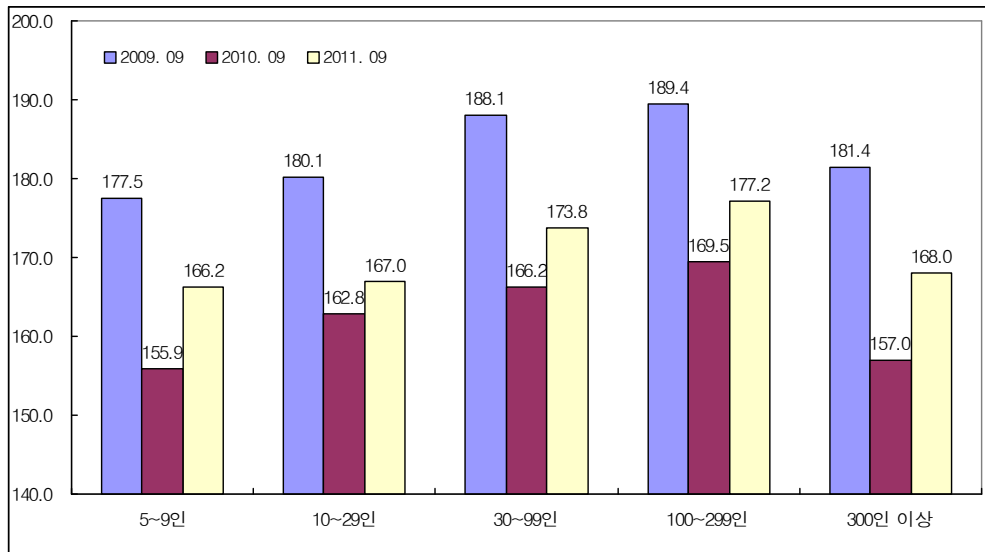
◆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증가

○ 2011년 9월 규모별 근로시간은 모든 규모에서 증가함.

- 상용근로자 5~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0.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1% 증가하였고, 300인 이상 사업체는 168.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0% 증가함.

[그림 11]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 시간)



주 :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성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동향

◆ 노사분규 발생 추이

-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22일 현재까지 노사분규 누적발생건수는 64건으로 나타나며, 근로손실일수(2011년 12월 14일 기준)는 417,641일로 집계됨.

〈표 10〉 노사분규 발생 추이

(단위: 개소, %)

	2011. 1. 1~12. 22	전년 동기	증 감(%)
노사분규 발생건수	64	85	△24.7
종 결	54	70	-
진 행	10 (1)	15 (2)	()는 전년도 이월
근로손실일수	417,641	487,255	△14.3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근로손실일수는 12월 14일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 주요 분규사업장 동향

○ 장기분규 사업장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3개 지회: 울산·아산·전주공장지회)
 - 12월 1일, 전주지회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현대차전주공장 비정규직 부당징계 수수방관 전북지노위 규탄」 제하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부당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접수함. 조합원 10여 명은 전북지노위 앞 천막농성 계속중임.
 - 12월 1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조합원 451명(51개 사 해고 45, 정직 406)의 구제신청사건에 대해 최종 판정회의를 개최함. 이 중 해고자 23명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으나, 그 외 나머지 조합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로 판정함. 12월 21일, 울산지회는 부산지노위 앞에서 부산지노위 규탄 집회를 개최하였음. 향후 부산지노위의 판정에 대한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한진중공업

- 지난 12월 2일, 노사는 임단협 본교섭을 실시하였음. 노조는 순환휴업 및 기간단축(6월 → 3월 단위) 및 해고자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을 요구하였음. 이에 사측은 휴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실현가능 범위 내에서 노조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하되, 출입카드 반납 등 퇴직 절차 준수의 필요성을 제기함.
- 12월 6일, 노사 요구안 중 핵심 사항에 대하여 수정요구안을 작성하고 차기 교섭 시 교환하여 해당 의제를 설명한 후 논의하기로 함. 한편 이날 사측은 노조에 생계비 지원과 관련된 문서를 발송하였음. 주요 내용으로는 “해고자들이 회사 작업복을 입고 타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지회가 적극적인 이해를 구하여 줄 것”과 “그런 일이 발생하고 대외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이들의 1년 후 재취업 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
- 12월 8일, 노사가 사내복지기금 협의회를 개최하여 3월 이상 휴직자를 대상으로 사내복지기금에서 500만 원 한도의 무이자 대부를 의결하였음.
- 12월 12일, 임단협 실무교섭에서 노조가 사측의 단협 수정요구안(비공개) 철회 의사를 물었으나, 사측은 철회 의사가 없다고 답변하여 진전 없이 종료됨.
-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노사는 현대중공업 등 동종 8개사를 개별 방문하여 타 임오프 실시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 12월 22일, 노사는 임단협 실무교섭을 실시하였는데 노조가 전임자 7명 인정을 요구하자 사측은 근로시간면제자 3명 외 추가전임자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다른 안건은 논의하지 못하고 교섭 종료함.

■ 공공운수노조 전북고속분회

- 노조는 2010년 12월부터 파업을 지속하고 있음. 지난 12월 19일, 사측은 공공운수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지난 8월 교섭대표 노조(전북자동차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며 불참을 통보함. 이날 노사는 회동을 가져 노조는 민·형사 취하 및 신분보장이 전제되면 복귀하여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입장을 사측에 전달하였으나, 사측은 선 업무복귀 입장을 고수함.
- 전북고속분회의 교섭권 인정 등에 대한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간 분쟁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4월, 전북고속지회를 제외한 6개 분회는 사용자와 잠정합의한 바 있으나, 복수노조 시행 후 교섭대표 노조가 전북자동차노조가 되면서 전북고속지회만 교섭이 타결되지 못하는 상황임.¹⁾

1) 사측은 지난 7월 교섭요구 노조(전북자동차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를 확정하여 공고함. 7월 29일에는 과반수 노조를 전북자동차노조로 공고하였고, 9월에 이르러 전북고속분회와 사측이 회

■ 수원여자대학교

- 지난 6월 10일부터 수원여자대학교 노조 조합원 20명은 단협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지속하고 있음.
- 노사는 2010년 11월부터 단협체결을 위해 교섭하였으나, 주요 쟁점 등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자 올해 3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음. 올해에도 6월부터 10여 차례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입장 차이로 진전 없이 종료함.
- 노사간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우선 임금체계에 있어 노조는 호봉제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측은 연봉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임.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큼. 지난 9월에는 노사가 집중교섭을 실시하여 징계위원 구성에 합의하는 등 다소 진전되는 듯 보였음.
- 그러나 노조가 단협 쟁점 외에도 기획조정실장이 연봉액 임의결정, 인사권 남용, 업무상 횡령 등을 행하고 있다며 그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교섭이 교착되기에 이 름. 그러나 10월에 들어 대학 측의 요청으로 총장과 지부장이 면담을 실시하여 11월 말까지는 교섭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원만한 타결을 위해 상호 노력기로 함. 이에 11월 23일 미합의 4개 사항 중 1개 사항에 대해서는 잠정합의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황임.

【미합의 3개 사항: 노<사>】 호봉제 실시 등 임금체계 개선(현 연봉제) <수용불가>, 임금 미지급분(노조주장 '04년 이후 매년 최고인상을 적용기준 지급차액) 환원 <수용불가>, 2009. 2. 1. 이후 징계처리에 대한 징계재심의 및 부당징계(과다감금)에 대한 보상 <수용불가>

- 지난 12월 21일, 노조는 사학비리에 대한 교과부의 감사를 청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는데, 경기경찰청의 조사결과 前 이사장 및 기획조정실장 등 불구속 입건되었으므로 교과부에 감사를 재요청함.

■ 유성기업

- 노조는 11월 말, 사측에 주간연속2교대제 관련 특별교섭과 임금교섭을 개최하고자 함. 그러나 12월 1일, 사측은 1노조(금속노조) 측에 임금교섭 상건례 개최를 요청함.
- 12월 5일, 2노조와 사측은 임금협약 조인식을 할 것으로 알려짐. 2노조와는 지난 11월 28일 임금교섭을 잠정합의하였고, 2노조는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등을 하였으나 사측은 교섭거부 입장을 취함. 이에 분회는 업무공간 제공 및 노조비 일괄공제·징계철회 등을 포함한 6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업무복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음.

하여 83.6%로 가결함.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 ▲기본급: 일급 1,500원(2.7%) 인상 ▲특별생산기여금: 통상 임금의 120% 연말 지급(개인별 차등하되, 지급기준은 노사 실무협약에서 결정)

- 12월 2일, 1노조와 사측은 임금교섭 상건례 개최하였으나 노조는 주간연속2교대 제 관련 특별교섭도 진행하자고 요구함. 그러나 사측은 임금교섭만 논의하자고 답변함. 한편 노조 측의 임금요구안은 임금 월 150,611원(일급 5,020원) 인상, 가족 수당 5,000원 인상, 조합원 수당 50,000원 인상(현행 70,000원) 등임.
- 12월 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차 징계해고자 4명이 11월 22일에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 건 및 1차 징계해고자 23명 관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사측의 이의신청 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였음.)
- 12월 8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및 대전충북지부는 천안고용지청 근처에서 「민주노조 사수! 노동탄압 분쇄! 유성기업 유시영(사장) 구속, 불법어용노조 해체 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함. 집회에 앞서 해고자 등 10여 명은 천안고용지청 정문 앞 도로에 천막 1동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함.
- 12월 15일, 1노조와 사측은 3차 임금교섭을 진행하였고, 사측은 노조의 요구 수준이 높아 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회보험지부와 직장노조는 임금인상, 연봉제 확대 반대 등을 주장하며 공동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차례 지역별 순환파업과 11월 30일 1일 총파업을 실시함.
- 12월 2일, 사회보험지부와 직장노조는 12월 5일에 예정된 지역별 순환 공단본부 로비 농성집회를 취소하고 사측과 집중 실무교섭을 진행하기로 함. 12월 7일에는 교섭 결과 평가 후 향후 투쟁방법 및 일정 등을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음.
- 12월 5일,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건강보험공단 현관 앞에서 피케팅을 실시함. 이들의 주장은 건강보험을 해체하고 의료민영화를 앞당기는 한미FTA 반대 등임. 노조지부장도 이 피케팅에 합류함.
- 12월 8일, 양 노조 위원장과 이사장이 공동면담을 실시함. 임금인상과 관련하여서는 사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함(총액 대비 4.1% 인상).

2) 12월 1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함.

○ 주요 분규사업장 등

■ 부산일보

- 부산일보 노조는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음. 조합원은 199명(직원수: 298명)임. 지난 11월 30일부터 노조는 사장퇴진 및 징계철회 등을 요구하며 사장실을 점거한 상황임.
-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은 사장퇴진 및 후보추천제 도입, 지부장 및 편집국장 징계철회, 정수재단 사회환원 등임.
- 노조는 편집국 조합원 주도로 사장의 지시를 거부하고³⁾ 1면에 「부산일보 제2의 편집권 독립운동」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12월 2일 사측은 지부장 등 조합원 1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부산동부경찰서에 고소하였음.
- 12월 5일, 출근 선전전 및 전 조합원 투쟁결의 대회를 개최함. 이날 편집국 조합원 주도로 신문을 발행하면서 신문 1면에 「박근혜 의원, 정수재단 이사장 직접 지명」이라는 기사를 게재함. 사측은 지부장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심처분인 면직을 확정함. 한편 12월 8일에는 편집국장에 대해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심처분인 대기발령을 확정하였음.
- 12월 9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주요 간부 50여 명이 부산일보 사옥 앞에서 한미 FTA반대, 부산일보 경영진 퇴진 등을 주장하며 확대간부 총파업 순환 집회를 개최함. 12일에는 언론노조가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음. 이날 주요 회견내용은 부산일보의 지분 100%를 정수재단이 보유하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경영과 편집에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사장선임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지난 3월 노사가 합의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정수재단이 인정하고 사장을 이 기구에서 추천된 후보 중 임명해야 한다는 것임.

■ 주한미군부대 경비용역업체

- 주한미군부대 경비용역 근로자들은 3개의 노조(조은시스템주한미군노조, 주한미군보안지부, 주한미군보안요원노조)에 가입되어 있음. 조은시스템주한미군노조와 주한보안지부는 상급단체가 한국노총임. 주한미군보안요원노조는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주한미군보안지부와 주한민군보안요원노조는 2011년 7월에 설립된 신생노조임.
- 지난 12월 1일자로 주한미군부대가 경비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기존의 조은시스

3) 11월 30일, 편집국장이 신문 1면에 ‘부산일보 사측 징계남발로 노사갈등 격화’라는 기사를 게재하려 하자 사장이 기사내용의 삭제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신문편집 지연으로 신문 발행이 중단됨.

템을 지포에스시큐어솔루션즈로 바꾸면서 분규가 발생됨. 문제의 발단은 신규업체인 지포에스시큐어솔루션즈가 기존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해 전원 고용보장은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됨. 기존업체 경비용역 인원은 870명이었음. 그러나 이 중 약 120명을 감원하고 근로시간도 연장함(월 176→240시간). 그러나 노조 측은 전원 고용보장 및 소정근로시간 연장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위 3개 노조 모두가 현재 공동으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 12월 1일, 3개 노조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철수한 상태이며, 주한미군 인근에서 농성을 전개하고 있음. 한편 주한미군 측은 경비인력 부족으로 미군부대 일부 게이트를 폐쇄하였음.
- 12월 9일, 3개 노조 전국조합원 등 400여 명은 용산미군부대 2번 게이트 앞에서 고용승계보장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함. 21일, 지포에스시큐어솔루션즈 측은 3개 노조 위원장 등 임원들을 제외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인사글과 근로계약서를 발송한 상태임. 3개 노조는 현재까지 조합원들이 지포에스시큐어솔루션즈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못하게 지침을 내린 상황임.

■ 피에스엠씨

- 피에스엠씨는 부산 해운대 소재 반도체 부품업체임(직원수 190여 명). 노조는 현재 금속노조 풍산마이크로텍지회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올해 8월에 신규로 설립된 피에스엠씨노조가 병존하여 있음.
- 1노조인 풍산마이크로텍지회는 2010년 4월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교섭에 진전이 없자 금속노조의 일괄조정 신청 등을 거쳤음에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2010년 12월, 기존 풍산그룹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음(고용승계 조건). 이후 2011년 10월 사측은 경영적자를 이유로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였고 이에 노조는 부분파업 등 정리하고 계획을 철회하도록 요구함. 노조는 11월 3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고, 11월 4일 사측은 정리하고 대상자 60명에게 해고 통지서를 발송함. 정리하고 대상자 중 57명이 1노조 조합원들임. 이들은 현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임.
- 12월 13일, 사측은 노조에 징계대상자(59명) 명단과 징계혐의 내용(무단결근 일수), 징계위원회 개최일자(12.20~12.22) 등을 통보함. 이에 16일, 금속노조는 사측을 단협위반과 불법대체인력 채용 등으로 부산동부지청에 고소하였음. 노사간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음.

【노<사> 주요 쟁점】 경영권 인수 관련 논의(근로조건 승계, 고용보장, 퇴직금 일괄 중간정산 등)와 경영정상화 방안 순차적 논의 <임금, 경영권 인수 관련 논의 및 경영정상화 방안 일괄 논의> 등

- 남원지역 학교(용북중학교 등 10개교) 교육 업무보조원 등
 - 전북 남원시 용북중 등 10개교 교육업무 보조원 등 27명은 민주노총 공공서비스 노조에 가입되어 있음. 각 학교당 조합원 수는 1명에서 7명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조합원은 많지 않음.
 - 그간 용북·산내·한빛·하늘중 등 4개교 노조는 2010년 11월부터 진행한 임금교섭이 진전이 없자 올해 2월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였고, 조정중지 결정 이후 쟁의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3월 25일 시한부 전면파업에 돌입함(파업 참가자 4명). 한편 인월중고 등 나머지 6개교 노조도 2011년 3월부터 개시한 임금교섭에서 진전이 없자 조정신청 이후 쟁의 찬반투표를 가결한 다음, 지난 5월 17일 1일 시한부 부분파업에 돌입함(8명).
 - 12월 2일, 노조는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1일 시한부 부분파업에 돌입함(용북중학교 등 10개교, 23명, 오후 4시간).
- 기아자동차
 - 12월 7일, 화성 1공장 조립1부 조합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근무배치에 반발하며 12월 2일부터 2시간 잔업을 거부함. 잔업거부에 돌입한 이유는 12월 2일 사측이 조립1부 3A반 야간근무 조 편성시 최소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타 라인에 배치하였기 때문임. 이날 근무해야 할 최소 인원 중 1명이 무단결근하여 조합원들이 사측에 인원 보충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자 인원배치 문제에 대한 선협의를 요구하며 잔업을 거부한 것임.
 - 사측은 주도자인 노조 대의원을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화성동부경찰서에 고소하였음.
 - 12월 8일, 화성 1공장 노사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사항에 대해 합의하였고, 정상근무 중임.
 - 한편 12월 15일에는 소하리 2공장 프라이드 조립라인이 중단되었는데 차량의 연료파이프 부분 불량으로 인한 화재 발생 때문이었음. 노조는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 임시산업안전보건회의 개최해야 한다며 4~5차례 사측의 라인가동 조치에 비상정지를 반복하다가 조립 대의원들에게 작업거부를 지시함(작업자들 대기).
 - 추후 노사가 화재 관련 산업안전보건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라인을 정상 가동함.
- KEC
 - 11월 30일, 사측은 2노조와 인력감축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함.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안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안을 제시하였으나, 1노조는 노사협의를 거부함.

- 12월 8일, 사측은 전 임원의 연봉을 30~100% 삭감하기로 했음을 공고함. 이미 하루 전인 7일, 사측은 KEC 내 양 노조에 대해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 기준을 통보하였고, 12일에는 희망퇴직 절차 및 위로금 지급 기준을 공고함.
- 12월 21일, 사측은 희망퇴직 신청자 30명(1노조원 2명, 2노조원 26명, 비노조원 2명)에 대해 희망퇴직자로 확정되었음을 개별 통보함.

■ 전남대학교 비정규직 교수

- 전남대학교 비정규직 교수들은 민주노총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에 가입되어 있음. 지난 12월 13일, 노조는 강의로 인상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대학 정문 앞) 후 천막농성(본부동 앞)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 노조는 지난 5월부터 임금교섭을 실시하였으나 진전이 없자, 11월 7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후 노사 모두 조정안을 거부함.
 ※ 지도위 조정안: ▲시간당 강의로 61,000원 ▲강의준비금 동결(현 3학점당 175,000원 유지)
- 이에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함(58.2% 찬성).
- 노조는 시간강사의 임금이 대학 전체 예산의 3%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대학 측의 추가 제시안이 없을 경우, 기말고사(12.13~12.19) 종료 후 성적 입력 거부 등 집단행동을 할 것을 시사함.
- 그러나 대학 측은 강의로 60,000원, 강의준비금 동결이 최종안이라며 3년간 등록금 동결 입장을 전달함. 또한 2012년 등록금 5% 인하(사업예산 10% 삭감)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은 어렵다고 밝힘. 노사간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노<사> 주요 쟁점】

- ▲ 강의로 인상: 시간당 현 54,000원 → 62,000원 <60,000원(11.1%)>
 * 시간당 강의로: '08년 50,000원 → '09년 52,000원 → '10년 54,000원
- ▲ 강의준비금 인상: 시간당 현 3,880원(3학점당 175,000원) → 4,880원 <동결>
 * 시간당 강의로와는 별도로 방학에 수업이 없을 경우 수입을 보전하고자 '04년도부터 매년 학기말에 3학점당 175,000원을 지급(국립대에는 경북대<3학점당 225,000원>와 전남대 등 일부만 시행)

■ 현대자동차

- 12월 8일, 노사는 타임오프와 정년연장 문제에 대하여 7차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결론 없이 종료함. 노조는 11월 말 타임오프와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 실무협의를 요구함. 그러나 사측은 타임오프 문제는 법률적 문제로 수용불가하고, 정년연장 문제는 연장 제외자 축소는 검토하겠으나 그 범위는 최소화하되, 단협상 정

년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겠다는 입장임.

【노조 요구사항】

- ▲타임오프: 금속노조 간부로 피선된 2명(박상철 위원장, 울산지역본부장)을 감안하여 무급전임자 2명 추가 인정
- ▲정년연장: 판매영업 12명, 정비 17명, 일반직 15명 등 44명의 근로자를 정년연장 대상자에 포함 요구(총 대상근로자 247명)
- *정년규정: 만 58세+1년(만 58세 기본급유지)+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 1년(계약직)

■ KBS노조

- KBS 내 6개 노조 중 KBS노조와 언론노조 KBS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노조는 임금교섭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임.4) 지난 9월부터 노사는 임금교섭에 돌입하였고, 11월 24일 노조는 조정신청을 한 바 있음. 12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 관련 2차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노사 자율교섭을 권고하고 12월 9일 최종 조정회의 개최하기로 함.
- 지난 9월부터 노사는 임금교섭에 돌입하였고, 11월 24일 노조는 조정신청을 한 바 있음. 12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 관련 2차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노사 자율교섭을 권고하고 12월 9일 최종 조정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임금교섭 쟁점은 기본급 인상임. 노조는 10%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측은 2011년 10월 수지분석 결과, 92억 적자 발생과 광고수익 감소로 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 12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최종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임금총액 대비 4.2% 인상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사 양측이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됨. KBS 노조와 언론노조 KBS본부는 모두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한 상황임.
- 12월 13일, 노사는 임금 실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진전 없이 종료함.
- 12월 14일, 노조는 임금인상 등을 주장하며 연장근로 거부 준법투쟁에 돌입함. 12월 19일, 언론노조 KBS본부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12월 15일부터 연장·휴일근로 거부 등 준법투쟁을 계속함.
- 12월 20일, 노조는 임금인상을 주장하며 촬영 및 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12월 19일부터 파업 중임. 12월 20일, 언론노조 KBS본부도 12월 23일, 전면파업 돌입 여부 논의를 위한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함.
- 12월 22일, 전국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합의(12.21) 무산 관련 경과보고 후 오후

4) KBS는 1사 6노조임. 노조 현황을 살펴보면 ①KBS노조(2,928명), 상급단체 미가입 ②언론노조 KBS본부(1,061명) ③언론노조 KBS자원관리지부(74명) ④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66명) ⑤KBS공영노조(30명) 상급단체 미가입 ⑥KBS방송전문직노조(52명), 한국노총 등임.

4시경 위원장과 사장이 독대하여 임금 등을 합의함. 노조위원장은 조합원에 임금 등의 합의내용을 발표하였고 23일 업무복귀함.

【합의내용】 ▲총액 대비 4% 인상 ▲복지카드 100만 원 증액 ▲대학학자금 복지기금 정상화 ▲인력 대규모 총원 ▲신입사원 임금정상화 ▲인사상 불이익처분 금지

■ 쌍용자동차 희망텐트촌

- 금속노조 구 쌍용자동차지부(해고자, 무급휴직자 중심)는 12월 7일부터 정리해고 철회 및 무급휴직자 즉시 업무복귀 등을 위하여 평택공장 앞에서 ‘쌍용자동차 희망텐트촌’ 행사를 계속 중에 있음.
- 12월 7일, 금속노조는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희망텐트촌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함. 평택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다시 설치할 경우에는 대책이 없지만, 23일 이후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힘.

◆ 노동계 동향

○ 민주노총·금속노조, 2012년 투쟁과 사업전망 관련 기자회견 개최

- 12월 1일,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은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어 2012년 투쟁과 사업전망을 설명함. 이러한 공동기자회견은 이례적인 것으로 사업전망의 주요 과제가 장시간 노동체제 개선, 불법과건 문제 등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제조산업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보임.
- 2012년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장시간 노동체제 및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심야노동 철폐, 주간연속2교대제의 도입과 쌍용차 등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한 문제해결, 현대차의 사내하도급 불법과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겠다는 것 등임.

○ 민주노총, 경총 성명에 대한 반박 성명 발표

- 지난 12월 5일, 민주노총은 12월 4일 경총이 발표한 박원순 시장의 ‘비정규직센터 건립’과 근로기준법 위반,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시민명예노동음브즈만’ 제도 도입, 서울지하철 등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한 성명에 대하여 비판 성명을 냄.
- 특히 박원순 시장의 노동정책에 대해 “노동계 편향적”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는 월권행위이자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로 경영계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이에 민주노총은 “고용부와 협의해 근기법 위반과 같은 기업의 불법행위를 감시

하는 것은 다수 서울시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기업의 불법과 착취 행위를 감시하는 일이 경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경총의 주장은 정상적인 경영이란 결국 불법과 착취란 말”이라고 비판함.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15차 ILO 아태총회 기조연설

- 12월 6일,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12월 4-7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15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기조연설에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기본협약(87호·98호)의 비준을 촉구하였음. 지난 14차 부산총회에서 ‘아시아 양질의 일자리 10년’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총회에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었음.
- 김영훈 위원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국에서는 차별과 기업의 수익률은 급격히 증가했지만, 노동소득 분배율 및 실질임금 하락, 임금불평등 확대, 비정규직 증가, 청년 실업률 상승 등을 근거로 ‘양질의 일자리 10년’이 아니라 ‘불안정한 일자리 10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한국정부는 ILO에 가입한 지 20년이 되도록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인 87호와 98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는 한국 노동자들은 겨우 11.3%에 불과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7%만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서, 지난 14차 부산총회에서 채택한 ‘아시아 양질의 일자리 10년’ 선언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에 관한 권리보장이라고 촉구함.

○ 한국노총, 민주통합당에 참여

- 12월 9일, 한국노총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통합정당에서 노사관계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힘. 12월 16일, 한국노총과 민주당, 시민통합당이 12월 16일 국회에서 ‘야권통합 수입기구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통합)을 공식 의결했음.
- 통합정당의 당명은 ‘민주통합당’으로 최종 결정했으며, 당헌·강령 등도 확정했음. 정식 지도부 선출 이전까지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시민통합당 이용선 대표가 임시로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음.5)
- 민주통합당은 12월 26일 지도부 경선에 나설 후보를 결정하는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한 뒤 내년 1월에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임.

5) 임시지도부 최고위원은 한국노총 정광호 전략기획처장,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최인기, 정범구, 최영희 의원, 시민통합당 최민희 사무총장, 유시춘 지도위원, 황인성 시민주권 공동대표 등으로 구성됐음.

○ 금속노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현대차 사내하청 조합원에 대한 징계판정에 대한 항의 성명 발표

- 12월 19일, 금속노조는 「대법이 인정한 현대차 불법파견, 부산지노위의 비상식·반노동 졸속판결을 규탄한다!(울산 현대차 사내하청 징계해고 부당판결에 대한 입장)」는 성명을 발표함.
- 12월 1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사내하청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 구제 신청에서 “울산1공장, 3공장의 징계자들은 현대자동차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지만, 나머지 공장(2공장, 4공장, 엔진변속기, 시트)의 징계자들은 하청업체의 근로자들로서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지 않다”고 사내하청 업체의 징계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금속노조는 “울산 1~4공장, 엔진변속기, 시트공장의 생산방식과 비정규노동자들의 작업방식은 아무런 차이가 없고, 이를 현대자동차조차도 인정하였음에도 1,3공장만 파견이 인정되고 나머지 공장은 도급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함. 더구나 “파견으로 인정한 1,3공장과 나머지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나 파견으로 인정되어 고용의제가 된 노동자는 이미 현대자동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 지위에 있게 되어 협력업체(파견사업주)가 행한 해고를 현대자동차가 행한 정당한 해고로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함.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실습생 뇌출혈 사고에 대한 논평 발표

- 12월 21일, 금속노조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고3 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고에 대해 “실습생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주말특근에, 야근까지 주당 58시간이 넘는 규정된 시간보다 18시간이나 초과하는 가혹한 노동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장시간 노동문제와 심야노동 철폐문제가 전 사회적 문제로 쟁점화되고 있는 이때 더욱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논평함.
- 이에 기아자동차, 고용노동부, 교과부는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하고, 학생의 쾌유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책임 있게 내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함. 또한 실습생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재해보상과 산재승인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산하 조직 사업장의 실습생 실태를 파악하여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안전보장을 위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 기타 동향

- KT 1노조는 위원장 선거로 내홍을 겪음(2009년 7월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24,810

- 명). 원래 선거는 11월 30일이었으나 11월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입후보자 등록공고 등 절차 위반에 따른 선거중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함. 그러나 중앙위원장과 지방본부위원장의 신규 등록이 없이 12월 8일 선거를 실시함.
- 지난 11월 16일 1노조의 제11대 임원선거 입후보가 마감되면서 3개 후보조가 등록함. 그러나 또 다른 1개 후보조가 기간이 촉박해 조합원 추천서명을 받지 못하여 등록을 못하게 되자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임. 법원의 결정 이후 진보성향의 다른 후보조도 집행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퇴를 요구함. 12월 5일, 장현일 후보조는 「탈법적인 KT노조 선거의 재등록을 거부하고 선거무효투쟁에 나서고자 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배포함. 이 성명서에는 “선거기간 중에도 불법·부정 선거 기도가 노골화”되어 왔다고 하면서 “투개표소를 기존보다 늘려 1번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의 참관인 수를 합해도 참관이 가능한 곳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 12월 7일, KT노조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선거중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강제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이에 성남지원은 KT노조가 1억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시까지 ‘강제집행 정지’를 결정함. KT노조는 예정대로 12월 8일 중앙위원장 등에 대한 선거를 진행하기에 이룸. 이 선거에서 현 집행부 소속의 정운모 씨가 당선됨(총원 24,236명, 투표자 23,372명(96.4%), 찬성 21,276명(91.0%)).

◆ 경영계 동향

- 경총,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성명
 - 11월 28일, 경총은 “당정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발표한 것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 되지만 “이는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함.
 - 경총은 무기계약 전환을 민간기업에까지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논평함.
- 경총, 박원순 시장의 노동행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발표
 - 12월 4일, 경총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주노총의 요구에 따라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비정규직센터의 건립, 기업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근로자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시민명예노동음브즈만’으로

임명해 운영하는 등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함.

- 주요 내용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계획이 “사실상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는 월권행위이자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로 경영계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각종 규제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정상적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정부, 국회 등 동향

○ 회사 돈 빼돌린 후 고의 폐업한 사업주 구속, 올해까지 12명째 구속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12월 9일 용역대금을 개인용으로 빼돌려 근로자 24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여 원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 정 아무개 씨(40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함.
- 구속된 정 아무개 씨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정보통신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S업체 등과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근로 시키고 용역대금 20억여 원을 수령하고도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도피한 바 있음. 지난 11월 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모 아파트 앞에서 근로감독관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즉시 해결할 것처럼 말하고 체불사유를 경영난임을 강조하여 풀려남.
-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체불임금 청산의지도 없이 회사 돈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끈질긴 수사 끝에 밝혀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함. 정 아무개 씨는 2003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이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6차례나 기소된 상습 체불 사업주로서 이번에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도 접대비, 해외여행 등으로 수천여만 원이나 탕진하고 최신형 외제 고급승용차(BMW528)를 타고 다니면서도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노력은 도외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밝혀짐.
- 고용노동부는 “금년 들어 벌써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12명을 구속하였다”고 하면서 악의·상습체불 사업주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활동경과 보고

- 12월 20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들과의 모임에서 사내하도급이 많이 활용되는 자동차·조선·전자·서비스 4개 업종별로 팀을 구성하여 4개월에 걸쳐 가이드라인 준수 현

황을 조사하였다고 밝힘.

- 이번 조사는 4개 업종, 243개소(원청 33개소, 하청 210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이유가 업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함.
- 조사 결과, 자동차와 조선은 주로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사내하도급이 활용되며, 물류·청소 등 보조적인 업무 외에도 의장·조립·도장 등 생산업무에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자와 서비스는 고용유연성과 함께 핵심적인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음. 생산 공정 등 핵심적인 업무는 원청 근로자가 수행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물류·포장·시설관리 등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LG디스플레이의 경우 물류업무를 사내하도급으로 활용하였다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다시 직영으로 전환한 사례임.
- 사업장별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실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음.

- 대우조선해양, LG디스플레이, 서울아산병원은 원청의 경영성과 일부를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도 지급
- 현대중공업은 원·하청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2010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원청보다 높게 책정
-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식당·휴게실 외에도 잘 갖추어진 보육시설, 피트니스 시설을 원·하청 공동으로 이용
- 서울성모병원은 원·하청 근로자에게 동일한 의료비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식당 이용시 식비도 원청과 동일하게 지원

○ 인권위, 특수산업 비정규직 인권 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12월 21일, 인권위원회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특수산업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발표회 및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음.
- 이날 실태조사 발표에서 △방송보조인력, △영화산업 스태프, △운동부 전임코치 등 특수산업 분야 종사자의 인권 실태와 정책 과제를 발표함. 연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KLI**

- 방송보조인력(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결합하는 파견·용역업체나 외주 제작사 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경우 지난 1년간 휴직 경험이 40.8%, 68.5%는 현재 직업에서의 실직이나 해고를 염려하는 등 1년 미만 단기 근로 형태의 높은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나타났음.
- 영화스태프의 경우, 1년 중 일을 쉬었던 기간이 있다는 응답이 84.8%, 평균 쉬 기간은 6.5개월이라고 응답함. 포괄임금제로 인해 연간 월평균 임금

수준이 73만 8천 원(신 달을 포함하여 연간임금을 나누었을 때)이며, 제작 환경에 따라 임금 체불도 빈번히 일어나 생계형 채무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학교 운동부 코치 대부분은 교육청 소속으로 특정학교에서 운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임코치들임. 전임코치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의 <운영(임용) 지침>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시간강사) 및 9급 및 10급 기능직(일용잡급직) 1호봉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음. 교육청의 예산 및 인원운영 계획하에 고용이 이루어져 학교장과 1년 단위로만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호봉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계속 계약시마다 1호봉을 임금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음. 특히 전문직종으로 분류되어 기간제법에서 제외되어 현재 법적으로는 정규직이 될 수 없음. 또한 전국(소년)체전 입상 실적이 없을 때는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항상 불안정한 고용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됨.

(김가람,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